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990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.

발 의 자:임오경·이수진·유정주

이상헌 · 장철민 · 김민철

박성준 • 윤후덕 • 서영교

전용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으나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음.

그런데 정신질환의 경중과 치료경과에 대한 고려 없이 정신질환자의 자격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 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.

이에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사회복지사가 될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2제5호).

법률 제 호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 환자(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)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행 혂 개 정 아 제11조의2(사회복지사의 결격사 제11조의2(사회복지사의 결격사 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유) -----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. 1. ~ 4. (생 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5.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상의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는 정신질환자(「정신건강증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 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아니하다. 말한다)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